###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2292 제출연월일: 2024. 7. 26.

제 출 자:정 부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운영하고 있는 '장애인 표준사업장'의 인증 제도는 고용노동부장 관이 장애인 고용 인원·고용비율 및 시설·임금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인증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서, 이는 특정 제품 등의 품질, 규격,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이나 기술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·평가하는 본래적인 인증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'인증' 제도를 '지정' 제도로 변경하는 한편,

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징수하는 연체금을 '월 단위'가 아닌 '일 단위'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연체금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##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4의 제목 "(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)"를 "(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,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"인증"을 각각 "지정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인증하거나"를 "지정하거나"로, "인증을"을 "지정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인증, 인증취소"를 "지정, 지정취소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인증"을 "지정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인증을"을 "지정을"로, "인증서"를 "지정서"로 한다. 제33조제4항 중 "인증"을 "지정"으로 한다.

제35조제3항 중 "납부 기한(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는 2월 말일)"을 "납부 기한(같은 조 제6항 또는 제7항제1호에따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징수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을 말하며,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 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2월 말일을 말한다)"으로,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월 단위로"를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여"로 한다.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의2(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) ① 제36조에 따른 징수 통지를

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 결과 통지의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다.

제86조제1항제2호 중 "인증서"를 "지정서"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.
- 제3조(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전의 연체기간 분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는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기간 분을 계산할 때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 단위 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의4(장애인 표준사업장의	제22조의4(장애인 표준사업장의
인증 및 인증취소) ① 장애인	<u>지정 및 지정취소)</u> ①
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	
제2조제8호의 기준을 갖추어 고	
용노동부장관의 <u>인증</u> 을 받아야	<u>지정</u>
한다.	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	②
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	
항에 따른 <u>인증</u> 을 취소할 수 있	<u>지정</u>
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	
우에는 <u>인증</u> 을 취소하여야 한	<u>지정</u>
다.	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	1
법으로 <u>인증</u> 을 받은 경우	<u>지정</u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 등	3
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<u>인</u>	<u>\text{\tinx{\text{\tinx{\text{\text{\text{\text{\tiny{\tinx{\text{\tinx{\tin\</u>
<u>증</u> 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	<u> 정</u>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	③
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<u>인증</u>	<u>지정</u>
<u>하거나</u> 제2항에 따라 <u>인증을</u> 취	<u>하거나</u> <u>지정을</u>
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	
한다.	<b>.</b>

-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, 인증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- ⑤ 제1항에 따라 <u>인증</u>을 받지 아니한 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⑥ 제1항에 따라 <u>인증을</u>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 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 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 나 <u>인증서</u>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3조(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)

- ① ~ ③ (생 략)
-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4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 인 표준사업장 또는 「장애인복 지법」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 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 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 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
- ⑤ ~ ① (생 략)제35조(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)

④ <u>지정, 지정취소</u>	-
 ⑤ <u>지정</u>	-
  ⑥ <u>지정을</u>	-
 지정서	-
  제33조(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)
④ <u>지정</u>	-
	-
  ⑤ ~ ⑪ (현행과 같음) 제35조(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)	)

- ①·② (생 략)
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33조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(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는 2월 말일)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 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「은행법」제2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월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.

④ (생 략)

<신 설>

-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---- 납부 기한(같은 조 제6항 또는 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하 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징수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을 말하며, 같은 조 제 8항에 따라 수정 신고를 한 사 업주의 경우에는 2월 말일을 말 한다)------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여 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- 제36조의2(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) ① 제36조에 따른 징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그 결과 통지의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

제86조(과	태료) ①	) 다음	각	호의
어느 하니	<del>ㅏ</del> 에 해┖	당하는	자에	게는
1천만원	이하의	과태호	呈를	부과
한다.				

- 1. (생략)
- 2. 제22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 나 <u>인증서</u>를 대여한 자
- 3. (생략)
- ② ~ ⑤ (생 략)

<u>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</u>
따른다.
제86조(과태료) ①
1. (현행과 같음)
2
<u>지정서</u>
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#### [별지 제1호서식]

#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I. 재정수반요인

선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35조제3항(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)	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로 징수하던 것을 일 단위로 징수하도록 개정

## 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# 1. 근거 규정

연 조·항(조제목) 번		미첨부 근거 규정	
1	안 제35조제3항(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)	제1호: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	

#### 2. 상세 사유

#### O 전산시스템 수정 구축 비용 20백만원

- 월 단위로 부과(체납된 부담금의 1만분의 75)하던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을 일 단위(체납된 부담금의 10만분의 25)로 부과하는 개정안에 따라,
- ● 부담금 온라인 신고·납부 사이트(www.esingo.or.kr)에서 연체금 납부고지서 조회 및 출력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편하고, ② 부담금 업무처리시스템(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)에서 연체금 일단위 징수결의, 수납, 정산, 체납관리가 가능하도록시스템을 수정 구축하고, ⑤ 국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(Dbrain)과의 연동 처리가 안정적으로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수정 구축 비용이 소요되며,
- 해당 비용은 20백만원으로 기재부 예산 심의를 통과하여 '24년 기금운용계획(예산) 에 편성되어 있음
  - \* 기능점수에 의한 개발원가 산정: 20백만원 (단위: 원)

구 분		금 액	비고
개발 용역비	소프트웨어 개발비	18,144,934	기능점수에 의한 개발원가 산정 기능점수 : 35.1
소프트웨어 개발비(부가세 별도)		18.689,282	
부 가 세		1,868,928	
합 계		20,000,000	※십만 단위 절사

## O 이상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

# Ⅲ. 부대의견

O 해당없음			

# Ⅳ. 작성자

# O 성명

주무관	사무관(서기관)	과장	실장・국장
이현지	박만수	김순재	임영미

### O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현지	044-202-7486	lhj6010@korea.kr